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10
----------	-----

2015. 12. 21.(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임희무 의원 등 7명

나. 제출일자 : 2015년 11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2월 15일

-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희무 의원)

가. 제안사유

○ 저출산 방지와 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부여와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자기계발 시간 마련 및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 특별휴가 신설(안 제18조제3항)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휴가 : 5일

○ 장기근속 지방공무원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신설(안 제18조제8항)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18조제9항)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 1일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방지와 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태아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고,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자기계발 시간마련을 위하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자에게는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자에게는 1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자에게는 15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방지 및 공무원 출산장려, 공무원의 자기계발 강화, 군 입영 자녀를 위한 특별휴가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및 공무원 출산장려를 위해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310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12월 일 (제 344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회무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5년 11월 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회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0
----------	-----

발의연월일 : 2015년 11월 23일

발 의 자 : 임회무, 엄재창, 김영주,
연철흙, 윤은희, 최광옥,
임순묵

1. 개정이유

- 저출산 방지와 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부여와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자기계발 시간 마련 및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 특별휴가 신설(안 제18조제3항)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휴가 : 5일
- 장기근속 지방공무원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신설(안 제18조제8항)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18조제9항)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 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 같이 신설한다.

- 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⑧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15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⑨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특별휴가) ①~ ②(생략)</p> <p>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제18조(특별휴가) ①~ ②(현행과 같음)</p> <p>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④ ~⑦(생략)</p> <p><u><신설></u></p>	<p>④ ~ ⑦(현행과 같음)</p> <p>⑧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15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p><u><신설></u></p>	<p>⑨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p>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